

법	대 통 령 령	시 조 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1962.01.20. 법률 제988호 개정 1963.11.11. 법률 제1444호 개정 1980.01.04. 법률 제3227호 개정 1990.08.01. 법률 제4242호 개정 1992.12.08. 법률 제4516호 개정 1999.01.18. 법률 제5632호 개정 2001.07.24. 법률 제6490호 개정 2003.05.29. 법률 제6898호 개정 2004.12.23. 법률 제7246호 개정 2007.12.21. 법률 제8737호 개정 2008.12.26. 법률 제9201호 개정 2011.03.29. 법률 제10466호 개정 2016.01.06. 법률 제13726호 (2016.7.7. 시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1.01.08. 대통령령 제13242호 개정 1991.12.17. 대통령령 제13517호 개정 1993.02.24. 대통령령 제13856호 개정 1997.02.06. 대통령령 제15271호 개정 1999.02.26. 대통령령 제16125호 개정 2001.11.22. 대통령령 제17412호 개정 2005.06.24. 대통령령 제18868호 개정 2006.03.23. 대통령령 제19407호 개정 2006.06.23. 대통령령 제19548호 개정 2008.07.09. 대통령령 제20911호 개정 2011.04.04. 대통령령 제22836호 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15호 개정 2012.07.09. 대통령령 제23939호 개정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개정 2013.12.27. 대통령령 제25029호 개정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5호 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25호 개정 2015.12.31. 대통령령 제26852호 개정 2016.07.06.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7.7. 시행) 개정 2017.05.08. 대통령령 제28019호 개정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7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9.28. 조례 제5362호 개정 2015.07.30. 조례 제5982호 개정 2015.10.08. 조례 제6040호 개정 2016.03.24. 조례 제6190호 개정 2016.05.19. 조례 제6243호 개정 2016.07.14. 조례 제6301호 개정 2017.07.13. 조례 제6546호 개정 2017.09.21. 조례 제667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역 다. 지하철역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라.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 <2016.7.6.> 3. 돌출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	
--	---	--

	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6의2. 입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	
--	--	--

	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또는 제16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	---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 허가취소 등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라.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 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 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야차광고물(이하 “야차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	--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삭제 <2016.7.6.>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영간판을 제외한 공영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	---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사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	--	--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한다. ③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	--	--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	---	--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시·도지사”로, “시·군·구 조례”는 “시·도 조례”로 본다.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건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로 또는 야광도로(도로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당해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변·건물 또는 업소의 여건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보다 추가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건물 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다. 그 밖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4층 이상의 건물명 표시 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3.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4. 제6조에 따른 공연간판 5. 제11조에 따른 현수막 및 현수막 게시시설 6.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7.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
--	--	---

		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9. 제5조에 따른 업소표지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4조제1항제4호·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7조제4호 후단에 따른 공연간판 나.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2. 연막·연기·안개 등 가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설비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다. 가. 제5항에 따른 연립형간판 나.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당해 건물명 표시 다. 그 밖에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 4.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낙뢰의 우려가 있거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자연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적용하고,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으로써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 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광고물등 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산정하여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⑤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역여건·업소의 수 등을 고려한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1.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으로 하며,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2. 업소의 증감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재질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자재는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되게 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
--	--	---

	제13조(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 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은 간판 각 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광고물등에는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5조에 따른 간판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의 표시면적 0.6제곱 미터 이하의 간판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 -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	--	---

		나. 간판의 크기는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2미터 이하,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7.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부터 제6호
--	--	---

		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명칭표시는 세로 1.8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1.5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아비날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당해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바.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간
--	--	--

		판의 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5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불구하고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업소표지의 표시방법)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제4조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2호의 절차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표시계획에 따른다. 2. 시 또는 자치구의 업소 등을 관리하거나 관련되는 부서의
--	--	---

		장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3.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 그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	--	---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당해 벽면의 가로폭이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의 돌출 폭·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돌출 폭 1.2미터 이내, 세로 길이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 두께 50센티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간판 게시시설의 세로길이는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의 5층 이하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공연 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하나의 게시시설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	--	--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시설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여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크기는 3.5미터 이내로써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 또는 가로 2미터 이내, 세로 3미터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자서광고에 한하며, 18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겹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3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제4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

	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여부는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을 말한다. 야하 같다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시·자치구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1. 제8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용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용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	---	--

	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 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특별시의 경우 :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의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림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최대 3.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영 제15조제6호나목의3)·다목·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	--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다. 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라. 군(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 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라.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	--

	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 및 라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다.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라.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9.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로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로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 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6.7.6.>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높이·면적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
--	---	--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 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 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사·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	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 40제곱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는 하나에 한한다).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 2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연립형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자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광고에 한하며,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4개
--	---	---

	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상 업소의 연립형 간판 1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은 0.3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표시위치·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 조례로 정한다.
--	---	--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하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그 지역의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쉼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4. 자동심장제세동기(AED),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위급시 피난처)과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대중전화부스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신규로 지정되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려면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형태·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 설치·관리되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시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 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비행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할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림막 이용 현수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계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강·노랑·파랑 또는 검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지정계시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조명 보조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외부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表示燈)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현수막 게시시설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까지는 1개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할 수 있다.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9조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또는 철거중인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따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공사명·공사개요·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의 5분의 1
--	---	---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최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시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나.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다. 그 밖에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곳 2. 규격은 가로 6미터 이내, 세로 7미터 이내여야 하며,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소 등의 현수막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과 다른 현수막의
--	--	--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할 수 없다. 3.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시신청이 게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 제5조제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6.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	---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중(空中)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등의 공공목적 내용 또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내용에 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묶어 표시할 수 있다. 4.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하, 수량은 4개 이하여야 하고, 애드벌룬에 직접 표시하거나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매달아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 또는 지면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30미터 이상 5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에는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워서서는 아니 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2. 높이는 10미터 이하로써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3. 내부조명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 제15조제3호·제7호·제8호 및 제9호를 준용 한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영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영 제16조제1
--	--	--

		항을 준용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벽보를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붙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른다.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어서는 아니 된다. 2.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야차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전탑 및 야차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할 수
--	--	--

		없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차대·횡단보도 또는 보도 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아치의 기둥 길이는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이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	--	--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지역 등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③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구 심의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유리벽 또는 창문 안쪽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3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④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	--	--

	은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제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9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 중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	미터 이상인 지구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제29조(간판표시계획서 및 광고물 경유제) 구청장은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적합하거나 영 제3장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 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	--	---

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차.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타.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 기둥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5. 도로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	---	--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바.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사.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아. 전망대 및 전망탑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차. 재배 중인 농작물 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 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	---	--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5.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물면적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한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
---	---	--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3. 은행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별표 1로 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	---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⑤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⑧ 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	--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표시구역에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지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②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

서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취지 2. 자유표시구역의 위치·범위 3.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 4.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 5. 그 밖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광역사·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3. 자유표시구역 지정일 ④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7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3.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4.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1.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법 제4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	--	--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것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併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제3조 제3항·제6항,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한다.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등과 광고물등의 설치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광고물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호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사행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와 절차·방법에 따라 광고물 등에 적용·사용될 수 있는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

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규격·디자인 등 설치 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 비율 및 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제32조제2항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시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의 수는 3명 내지 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심의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4의2.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시·구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또는 시·자치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가.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센티미터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한다) 나.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규격 확대, 위치·장소 변경, 사용 자재 변경을 포함한다) 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라.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 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간판 또는 타사광고 나.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 면적 10제
--	--	---

자치도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③ 정책위원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적용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雇)할 수 있다. 1. 심산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다.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라.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안전점검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로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	제2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9조제1항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2.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과 전광류 광고물등·디지털광고물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	--	---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로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 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상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사·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⑧ 사·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시기 2. 점검대상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①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소유 또는 설치·유지·관리하는 주체는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경고(戒告)하여야 한다.	3. 점검방법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의 결과 및 이유 등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의2(시·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	
--	---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⑥ 삭제 <2016.1.6.>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	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의 필요성 2. 점검 대상 지역 3. 점검 시기·방법 등 4. 점검 인력·장비·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등과의 협력사항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	
---	--	--

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 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차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군·구에 귀속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	---	--

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	
---	---	--

한 사업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마케팅 조사 등에 관한 사업 및 그 지원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8.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광고물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0.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11.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⑧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8항에 따	
--	--	--

할 수 있다.	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 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취득·상실 및 회원의 권·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단체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	---	--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13.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광고물등의 교육) ① 시장은 옥외광고의 수준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은 교육개시 3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제5항 및 영 제50조에 따라 교육 실시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에 따라 타사광고는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상 표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명제 표시는 모바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번호·위치·규격·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 실명제 표시의 위치는 광고물등의 아래부분으로부터 160센티미터 높이의 오른쪽으로 한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0조(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광고물의 발굴·확산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좋은간판 공모전을 실시하여, 좋은간판으로 선정된 점포주·광고주·제작자·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해서는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5조(청문)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2.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3.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17조의3(벌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장 규제의 재검토 제5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 2015년 1월 1일 4. 제7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 2015년 1월 1일 4의2. 제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2016년 1월 1일 5. 제9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 2015년 1월 1일 6. 제12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2014년 1월 1일 7. 제14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2014년 1월 1일 8. 제15조에 따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2014년 1월 1일 8의2.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2016년 1월 1일 9.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2015년 1월 1일 10.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2015년 1월 1일 11.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2015년 1월 1일	
---	---	--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제21조제6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의 제한 기준 : 2015년 1월 1일 13. 제24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 : 2015년 1월 1일 14. 제26조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 2015년 1월 1일 15.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운영 : 2015년 1월 1일 16. 제28조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2015년 1월 1일 17. 제29조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2015년 1월 1일 18.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 2014년 1월 1일 19.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 2014년 1월 1일 20.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 2014년 1월 1일 제13장 과태료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	--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거나 설치된 광고물등은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옥외광고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고물제작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 칙 <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 협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등기부로 본다. 부 칙 <19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부 칙 <1991.1.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 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시·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부 칙 <199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6조 생략 부 칙 <199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부 칙 <제5362호, 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등 중 영 제8조 별표 1에 따른 표시기간이 2년 이상인 광고물등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광고물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실명제 표시는 이 조례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현수막 게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5982호, 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40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0호, 201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부 칙 <2001.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적용 예)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광고물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표시를 할 수 있다. 부 칙 <199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1999.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등은 시·도 조례로 이를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2001.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또는 신고대상 게시시설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	부칙 <제6243호,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1호, 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46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협의·심의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광고물등은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6674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7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 예)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04.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4항제1호·제14조·제15조제2호·제17조·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결격사유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이 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부 칙 <2007.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의2는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표시기간의 만료시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용자동차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5조(교통수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박·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등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6.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시·군 또는 구조례 등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군·구조례로 정할	
--	--	--

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업자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부비치 및 등록번호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항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지정·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거나 정할 사항은 각각 당해 시·군·구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시·도조례 또는 시·도지사 고시하거나 정한 바에 의한다. 부 칙 <2006 6.23.>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811호, 2008.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5조·제31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은 그 표시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7조(광고물 실명제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시·군·자치구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726호, 2016.1.6.>	부 칙 <22836호, 2011.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3호의2 및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215호, 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도지사가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지정 및 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사항은 각각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 시·군·구 또는 시장등이 정하거나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4조(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2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3939호, 2012.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5825호, 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23호, 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표시한 가로형 간판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표시한 세로형 간판 중 이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	
--	---	--

제5조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로 한다.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아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3호 중 "「옥외광고	물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신고에 따른 표시기간까지로 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광고물로서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된 광고물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신고 없이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3항 단서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바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및 제451조제1항·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6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 산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	--

제2조제2호차목,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로 한다.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28527호, 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산업 · 교통 분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따른 공항 •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법」에 따른 역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 · 휴양 분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 · 공용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 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수수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은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게시시설을 포함) 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영 제9조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중 광고내용 변경은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5. 수수료의 적용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또는 3년 미만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3년을 기준으로 하는 월 단위 표시기간의 비율을 적용한다.
6.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 1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는 1제곱미터로 본다.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제27조제2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수수료 ※사·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20%를 가산하며,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40%를 가산한다.(게시시설을 포함한다).
 - 나.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영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과 1년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또는 안전점검 불합격 광고물등에 대한 재점검은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7조의2 관련)

광고물등	적용 기준	이행강제금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하 • 9.0㎡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비고를 따른다.
- 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등 중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광고물등의 이행강제금은 자치구청장이 부과한다.
- 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법 제3조의 허가신고를 위반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풍수해 등을 대비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자치구청장이 부과한다.

제 호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 자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법인)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⑨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기관·단체)의 소개서(보유시설·장비·인력 등 포함)				수 수 료
				없 음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미신청 []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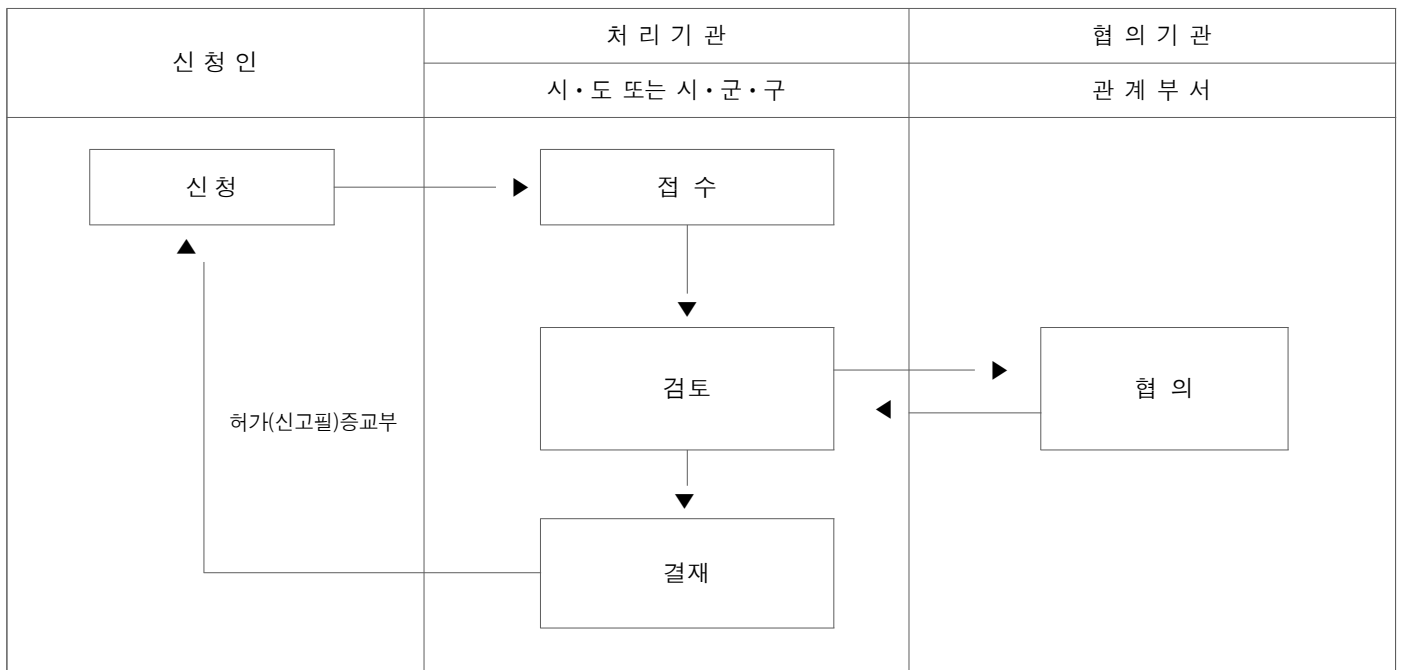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5.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수수료 ※ 시·도 또는 시·군·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 별도로 징수합니다.
------	---	--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명칭·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표시기간		
광고물등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시공업소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허가조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광고물 관리자 (변경 전)	성 명 (인)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광고물 관리자 (변경 후)	성 명 (인)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변경 사유				변경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	--

유 의 사 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에 대한 연장 허가신청(신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 소		
광고물등 허가일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시공업자	대표자	신고번호	
	업소명	주 소	
검사자	성 명	검사일	
	소 속	주 소	
검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점검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옥외광고사업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영업장(사무실 또는 작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 종류)
-------	---	-------------------------

영업 내용

변경 등록 기재부분

변경내용	변경 구분	[]대표자 []업소(법인)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기술능력 []기타
	변경 연월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폐업·재개업 기재부분

휴업·폐업 연월일	휴업·폐업 사유
-----------	----------

휴업기간

재개업 연월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4.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 시·군·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조례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증

1. 성 명(대표자)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3. 주 소
4. 업소명
5. 영업장(사무실 또는 작업장) 소재지
6. 영업내용
7. 기 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

직인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장 소재지		
재발급 신청사유	분실		훼손		기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옥외광고사업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

1. 특정구역 지정

가. 붙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참조

나. 도면 생략(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와 해당자치구 광고물관리부서에 비치함)

2. 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

가.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려는 네온류와 다른 네온류, 새로 설치하려는 전광류·디지털광고물과 다른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각각 수평거리 200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계획사업·건축공사 등으로 주변 형상의 현저한 변화, 생활환경 침해 민원 발생, 각종 법규·제도의 개정 등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나. 자치구별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후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쳐 자치구에서 공고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은 그 심의기준에 따라 네온류,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등의 신규설치에 관하여 추가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

3. 부 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1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타사광고)」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자사광고)」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9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특정구역

도로에 접하는 모든 토지·건물에 적용함

연번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해당 자치구
1	대학로	종로구 종로5가 87-4(종로 215)	종로구 혜화동 132-1(청계천로 270)	1,621	40	종로구
2	돈화문로	종로구 장사동250-1(청계천로 133)	종로구 와룡동 5-14(돈화문로97)	1,029	20	종로구
3	북촌로	종로구 재동 104-1(율곡로 61)	종로구 삼청동 22(삼청로 132)	1,508	20	종로구
4	사직로	종로구 행촌동 209-35(사직로 5)	종로구 세종로 1-58(삼청로 1)	1,871	30	종로구
5	우정국로	종로구 관철동287(청계천로 49)	종로구 수송동 9-2(율곡로 4길 2)	740	30	종로구
6	율곡로	종로구 세종로 1-58(삼청로 1)	종로구 창신동 440-10(율곡로 309)	3,149	30	종로구
7	자하문로	종로구 적선동 107-1(사직로 125)	종로구 홍지동 95-1(세검정로 226)	3,196	27	종로구
8	종로	종로구 종로1가 1(종로1)	종로구 송인동 1252(종로 413)	4,189	35	종로구
9	평창문화로	종로구 신영동 29-6(평창문화로 5-1)	종로구 평창동 596(평창문화로 172)	2,383	22	종로구
10	삼청로	종로구 사간동(삼청로 4)	종로구삼청동26(삼청로 146)	1,420	14~30	종로구
11	새문안로	종로구 세종로 204-1(새문안로 105)	서대문구 충정로1가 85(통일로 120)	1,100	40	종로구, 서대문구
12	동호로	종로구 종로5가182-4(동호로 408)	성동구 옥수동 191-3(한림말길56)	3,900	35~40	종로구, 중구, 성동구
13	보문로	종로구 송인동 1242(보문로 5)	성북구 동소문동5가 3(동소문로 72)	2,100	25~35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14	지봉로	종로구 창신동436-73(청계천로 341)	성북구 보문동 2가 151(지봉로 180)	1,800	25	종로구, 성북구
15	세검정로	종로구 신영동219-4(세검정로 9길 1)	서대문구 홍제동294-46(통일로 484)	2,800	18~36	종로구, 서대문구
16	진흥로	종로구 신영동 214-9(세검정로 9길 1)	은평구 역촌동 44-28(연서로 10)	3,400	30~35	종로구, 은평구
17	청계천로	종로구 서린동 159-1(청계천로 1)	동대문구 답십리동 463-13(천호대로 177)	5,900	25~60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18	무교로	종로구 서린동136(종로 14)	중구 태평로1가31(세종대로 110)	400	20	종로구, 중구
19	수표로	종로구 낙원동93(수표로 134)	중구 충무로3가 52-15(청계천로 165)	1,350	14~20	종로구, 중구
20	세종대로	종로구 세종로 77-6(세종대로 209)	중구 봉래동2가 122(청파로 426)	2,240	50~100	종로구, 중구
21	남대문로	중구 남대문로 29(세종대로 40)	중구 다동 85(중구 남대문로125)	1,349	39	중구
22	마른내로	중구 저동1가 1-2(삼일대로 340)	중구 광희동 1가 194-2(마른내로 169)	1,744	20	중구
23	소공로	중구 회현동1가 146-1(소공로 3길 29-8)	중구 태평로2가 23(소공로 119)	1,286	47	중구
24	소파로	중구 남창동 205-83(소월로 39-2)	중구 남산동 3가 32-2(소파로 145)	1,620	34	중구

25	을지로	중구 소공동 91-1(소공로 116)	중구 을지로 7가 11-4(을지로 294)	3,018	30	중구
26	칠패로	중구 중림동 10-3(청파로 450)	중구 봉래동 1가 4-2(칠패로 46)	565	26	중구
27	퇴계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한강대로 416)	중구 황학동 2494(청계천로 463)	4,709	39	중구
28	장충단로	중구 장충동2가 201(장충단로 60)	중구 을지로6가18-12(장충단로 275)	2,800	25~40	중구
29	통일로	중구 봉래동 2가 122-28(통일로 1)	은평구 진관동 29(북한산로 2)	15,000	20~40	중구, 서대문구, 종로구, 은평구
30	창경궁로	중구 충무로5가 19-7(창경궁로 2)	성북구 삼선동1가3-3(창경궁로318)	3,170	25~32	중구, 종로구, 성북구
31	마장로	중구 을지로7가 2-1(을지로 281)	동대문구 용답동121(마장로 360)	3,600	20~24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32	만리재로	중구 봉래동2가122(청파로 426)	마포구 공덕동255-9(만리재로 3)	2,200	28	중구, 용산구, 마포구
33	서소문로	중구 서소문동12-1(서소문로 141)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충정로8)	1,440	30	중구, 서대문구
34	후암로	중구 남대문로5가 581(후암로 110)	용산구 후암동194-8(후암로 1)	1,700	20	중구, 용산구
35	소월로	중구 남창동 51-1(소월로3)	용산구 한남동726-74(소월로 377)	3,800	20	중구, 용산구
36	한남대로	용산구 한남동 453-3(한남대로 12)	용산구 한남동 726-370(한남대로 204)	2,200	43	용산구
37	서빙고로	용산구 한강로 3가 44-6(한강대로 60)	용산구 한남동 773-1(유엔빌리지3길 118)	5,645	39	용산구
38	원효로	용산구 청암동 168-24(원효로 7)	용산구 청파동3가 80-7(청파로 247)	2,760	27	용산구
39	이촌로	용산구 한강로 3가 16-85(이촌로 1)	용산구 용산동6가 69-165(이촌로 347-11)	3,681	25	용산구
40	효창원로	용산구 청암동 168-24(원효로 7)	용산구 청파동3가 80-7(청파로 247)	2,160	15~20	용산구
41	이태원로	용산구 한강로1가 20-1(이태원로 1)	용산구 한남동 727-56(이태원로 294)	3,134	20	용산구
42	녹사평대로	용산구 서빙고동134(서빙고로 279)	중구 회현동산1-16(소파로 57)	4,000	38	용산구, 중구
43	청파로	용산구 원효로 4가 118-20(원효로 100-38)	중구 중림동355(청파로 464)	4,900	30	용산구, 중구
44	다산로	용산구 한남동 726-180(다산로 8-12)	중구 신당동 217-91(청계천로 334)	2,800	30	용산구, 중구
45	한강대로	용산구 한강로 3가65-230(한강대로 26)	중구 봉래동2가 541(한강대로 416)	4,200	40	용산구, 중구
46	삼일대로	용산구 한남동726-157(소월로 375)	종로구 윤니동 114-8(울곡로 64)	4,700	40	용산구, 성동구, 중구, 종로구
47	독서당로	용산구 한남동 557-37(독서당로 3길 7)	성동구 행당동344(독서당로 441)	4,400	25	용산구, 성동구
48	왕십리광장로	성동구 행당동 147(왕십리로 280)	성동구 행당동196-25(왕십리로 298)	548	33	성동구
49	성수일로	성동구 성수동 1가13-16(광나루로 196)	성동구 성수동1가 656-356(성수일로 1)	1,191	20	성동구
50	성수이로	성동구 성수동 2가 442(성수이로 3)	성동구 성수동2가 289-2(광나루로 254)	1,549	20	성동구
51	마조로	성동구 행당동 26-6(왕십리로 236)	성동구 마장동 774-1(마장로 284-1)	871	20	성동구
52	행당로	성동구 금호동1가125-1(행당로 1)	성동구행당동319-1(고산자로 203)	940	20	성동구

53	왕십리로	성동구 성수동1가532-12(왕십리로14)	중구신당동170-30(왕십리로415)	3,900	30	성동구,중구
54	독섬로	성동구 옥수동100(한림말길 50)	광진구 구의동596-5(독섬로 742)	6,750	15~30	성동구, 광진구
55	광나루로	서울 성동구 성수도1가683(고산자로 71)	서울 광진구 구의동 631-1(광나루로 56길 29)	6,254	25~30	성동구, 광진구
56	아차산로	성동구 성수1가656-1731(아차산로6)	광진구 광장동 22-1(위커힐로177)	7,500	30~40	성동구, 광진구
57	무학로	성동구 도선동 361(왕십리로 362)	동대문구제기동1153-10(무학로202)	2,040	25	성동구, 동대문구
58	고산자로	서울 성동구 성수도1가683(고산자로 71)	동대문구제기동1149-8(고산자로 572)	6,200	10~40	성동구, 동대문구
59	동일로	광진구 자양동210-22(동일로2길 2)	노원구 상계동 1203(동일로 1794)	17,000	30~35	성동구, 광진구, 종량구 ,노원구
60	능동로	광진구 자양동 72-1(능동로 5)	광진구 중곡동 169-80(용마산로 171)	4,500	35	광진구
61	자양로	광진구 자양동 690-33(자양로 2길2)	광진구 구의동 143-3(자양로 328)	3,300	25~35	광진구
62	강변역로	광진구 구의동 587(강변역로 2)	광진구 구의동 546-4(광나루로 56길 85)	1,100	20	광진구
63	구의강변로	광진구 자양동 695(구의강변로 11)	광진구 구의동 199-18(구의강변로 106)	1,050	20	광진구
64	긴고랑로	광진구 중곡동 238-5(긴고랑로 1)	광진구 중곡동 72-64(긴고랑로 211)	2,100	20	광진구
65	자양변영로	광진구 자양동 227-1(아차산로 306)	광진구 자양동592-14(자양강변길 297)	900	20	광진구
66	면목로	광진구 군자동 48-24(군자로 141)	종량구 상봉동 115-1(면목로 495)	5,100	10~20	광진구, 종량구
67	용마산로	광진구 중곡동 93-11(천호대로 639)	종량구 신내동 342-6(용마산로 717)	7,303	25	광진구, 종량구
68	서울시립대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464-1(서울시립대로)	동대문구 전농동152-11(서울시립대로 164)	1,653	25	동대문구
69	약령시로	동대문구 제기동 148-115(약령시로 2)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왕산로 239)	1,694	20	동대문구
70	왕산로	동대문구 신설동 101-6(왕산로 4)	동대문구 휘경동 343-4(왕산로 312)	3,191	32	동대문구
71	이문로	동대문구 이문동 217-8(신이문로 43-1)	동대문구 이문동 255-282(이문로 182)	2,078	29	동대문구
72	장안벚꽃로	동대문구 장안동465-5(장안벚꽃로 9)	동대문구 휘경동6-9(한천로 312)	3,443	20	동대문구
73	장한로	동대문구 장안동 416-5(장안로 3)	동대문구 장안동 313-1(장한로 28가길 129)	2,083	30	동대문구
74	전농로	동대문구 전농동 602-3(왕산로 280)	동대문구 답십리동 492-1(동대문구 천호대로 313)	2,499	25	동대문구
75	제기로	동대문구 제기동 142-22(안암로 124)	동대문구 청량리동31(왕산로 277)	1,663	25	동대문구
76	홍릉로	동대문구 청량리동 749(왕산로 195)	동대문구 청량리동 1-217(회기로 56)	1,264	23	동대문구
77	휘경로	동대문구 이문동 288-12(이문로 112)	동대문구 휘경동 119-21(한천로 373)	800	20	동대문구
78	난계로	동대문구 신설동117-21(천호대로 2)	성동구 금호동 1가 596-1(난계로3)	2,750	10~25	동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79	회기로	동대문구 제기동 1149-17(종암로 6)	동대문구 휘경동 183-144(회기로31길 1)	2,036	20	동대문구, 성북구

80	안암로	동대문구 신설동 53-3 (안암로 6)	성북구 종암동 1-2(안암로 145)	1,780	25	동대문구, 성북구
81	한천로	동대문구 장안동 413-1(한천로 4)	강북구 수유동 279-67(한천로 1182)	11,840	18~28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82	답십리로	동대문구 전농동 621-1(완산로 176)	중랑구 면목동 1341-10 (용마산로 193)	4,100	25~30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83	사가정로	동대문구 답십리동456-6(천호대로 233)	중랑구 면목동1081-12(사가정로 71길 7)	4,150	16~23	동대문구, 중랑구
84	겸재로	동대문구 휘경동49-295 (장안벚꽃로 291)	중랑구 면목동 531-41(용마산로 439)	2,700	25	동대문구, 중랑구
85	망우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343-4(왕산로 312)	서울 중랑구 망우동 128-29(망우로 511)	5765	35	동대문구, 중랑구
86	천호대로	동대문구 신설동 117-21(천호대로 2)	강동구 상일동 325-1(천호대로 1477)	15,510	20~40	동대문,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87	봉우재로	중랑구 면목동 191-89(봉우재로 1)	중랑구 망우동 465-14(용마산로 501)	2,470	22	중랑구
88	상봉로	중랑구 면목동 67-2(용마산로 381)	중랑구 망우동 564-7(망우로 366)	1,381	24	중랑구
89	신내로	중랑구 망우동 489-1(망우로 403)	중랑구 묵동 6(신내로23길 36)	2,887	23	중랑구
90	봉화산로	중랑구신내동385-7(봉화산로 250)	중랑구 중화동 330-81(중랑천로 188)	2,600	20	중랑구
91	공릉로	중랑구 묵동 176-35(동일로 900)	노원구 중계동513(중계로 208길 19)	3,940	16~25	노원구 (중랑구는 제외)
92	성북로	성북구 동소문 1가16(동소문로 1)	성북구 성북동 330-428 (대사관로 46)	1,945	20	성북구
93	인촌로	성북구 보문로 1가 127(보문로 116)	성북구 안암동 5가 34-1 (안암로 119)	1,214	30	성북구
94	동소문로	성북구 동소문 1가16(동소문로 1)	성북구 하월곡동 196(동소문로 324)	3,324	32	성북구
95	정릉로	성북구 정릉동산 1-1(정릉로 49)	성북구 종암동 3-545(종암로 145)	4,350	25	성북구
96	돌곶이로	성북구 석관동 332-218(돌곶이로 3)	성북구장위동218-32(월계로 172)	2,340	20	성북구
97	아리랑로	성북구 동소문6가133-7(아리랑로3)	성북구정릉동139-58(정릉로 272)	1,450	25	성북구
98	종암로	성북구 하월곡동 186-1(종암로 214-1)	동대문구 제기동 1149-8 (고산자로 572)	2,170	10~40	성북구, 동대문구
99	삼양로	성북구 길음동 1258(삼양로 13)	강북구 우이동 3-1(삼양로 685)	6,700	20~28	성북구, 강북구
100	솔샘로	성북구 정릉동 677-1(정릉로 175)	강북구 미아동 65-2(도봉로 87)	3,260	25~35	성북구, 강북구
101	화랑로	성북구 하월곡동90-225(화랑로 1)	노원구 공릉동 26-19(화랑로 815)	8,600	35	성북구, 노원구
102	도봉로	성북구 길음동221-1(도봉로 1)	서울구 도봉구 도봉동 354(도봉로 969)	9,840	10~40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103	인수봉로	강북구 미아동 1354-4(솔샘로 177)	강북구 수유동 569-63(수유동 4.19로 35)	3,202	20	강북구
104	삼각산로	강북구 수유동 522-35(삼각산로 4-5)	강북구 수유동 143(삼각산로 166)	1,678	20	강북구
105	수유로	강북구 수유동 57-16(수유로 2)	강북구 수유동 2-8(수유로 83)	859	25	강북구
106	오현로	강북구 미아동 66-6(도봉로 82)	강북구 번동 237(오현로 208)	2,218	20	강북구
107	월계로	강북구 미아동42-11(월계로 3)	노원구 월계동 321-7(월계로376)	5,740	25~35	강북구, 성북구,노원구

108	노해로	강북구 수유동 45-1(노해로3)	노원구 상계동718-2(노해로 527)	5,110	20~35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109	덕릉로	강북구 수유동461-8(덕릉로 2)	노원구 상계동 30-1(덕릉로 894)	8,200	8~25	강북구,도봉구, 노원구
110	방학로	강북구 우이동 265-11(방학로 384-11)	도봉구 방학동722-27(방학로 32)	3,650	22~30	강북구, 도봉구
111	도당로	도봉구 쌍문동 20-15(해동로 198)	도봉구 방학동 654-20(도봉로 703)	1,519	20	도봉구
112	도봉산길	도봉구 도봉동 411-1(도봉산실 81)	도봉구 도봉동 559-31(도봉로 927	895	25	도봉구
113	마들로	노원구 월계동 18(마들로 31)	도봉구 도봉동 38-3(도봉로 964-40)	9,100	26	노원구, 도봉구
114	노원로	노원구 공릉동 90-4(노원로 3)	노원구 상계동 664(노원로 586)	6,005	31	노원구
115	섬밭로	노원구 공릉동 609-11(화랑로 405)	노원구 중계동 502-1(노원구동일로 207길 18)	3,297	20	노원구
116	수락산로	노원구 상계동 172(상계로 193-14)	노원구 상계동 922(수락산로 254)	2,608	20	노원구
117	중계로	노원구 하계동 69-1(노원로 186-7)	노원구 중계동 411-1(중계로 244)	2,487	20	노원구
118	한글비석로	노원구 하계동 357(한글비석로 4	노원구 상계동 856(한글비석로 585)	5,902	2	노원구
119	불광로	은평구 대조동26-26(불광로 1)	은평구 불광동 87-3(연서로 332)	2,040	25	은평구
120	역말로	은평구 역촌동 51-79(갈현로 88)	은평구 대조동 84-115(통일로 71길 2)	1,800	20	은평구
121	연서로	은평구 응암동 85-41(연서로 1)	은평구 진관동 332-2(북한산로 228-7)	6,510	35	은평구
122	은평로	은평구 신사동 19-160(은평로 1)	은평구 응암동 15-5(통일로 605)	2,500	25	은평구
123	서오릉로	은평구 구산동308-182(서오릉로 277)	은평구 응암동 84-6(서오릉로 3)	4,100	30	은평구
124	증산로	은평구 응암동85-41(증산로 477)	마포구 성산동 24-6(월드컵북로 293)	4,700	30~35	은평구, 마포구
125	가재울로	서대문구 남가좌동 332-19(모래내로 209)	서대문구 남가좌동 215-56(가재울로89)	460	20	서대문구
126	신촌역로	서대문구 창천동 4-77(신촌역로 43)	서대문구 대현동 101-17(신촌로 155)	609	29	서대문구
127	증가로	서대문구 연희동 134-18(연희로 119)	서대문구 북가좌동 343-11(증가로 261)	2,723	23	서대문구
128	홍제천로	서대문구 연희동446-86(홍제천로 6)	서대문구 연희동 169-14(연희로 251)	2,124	21	서대문구
129	모래내로	서대문구 홍제동 156-1(모래내로 470)	마포구 성산동 592-6(월드컵로 190)	4,900	10~20	서대문구, 마포구
130	연희로	서대문구홍은동217-6(연희로407)	마포구 동교동 147-4(연희로 3)	4,100	25	서대문구, 마포구
131	성산로	서대문구 현저동 104(성산로 701)	마포구 망원동 463-2(방울내로 11길 181)	6,650	24~40	서대문구, 마포구
132	신촌로	서대문구 북아현동 806(신촌로 325)	마포구 동교동 173-3(신촌로 6)	3,300	30	서대문구, 마포구
133	동교로	서대문구 연희동 218-19(동교로 296)	마포구 망원동 211-42(동교로 7)	2,900	15~22	서대문구, 마포구
134	응암로	서대문구 북가좌동 385-35(수색로 132)	은평구 녹번동 161-1(응암로 379)	4,100	25	서대문구, 은평구
135	가좌로	서대문구 연희동 149(연희로 129)	은평구 신사동 265-4(가좌로 400)	3,500	25	서대문구, 은평구

136	수색로	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292-3 (수색로17)	서울은평구수색동293-50 (수색로408)	4,111	35	서대문구, 은평구
137	새창로	마포구 도화동 566(마포대로 78)	용산구 한강로2가 314-1 (한강대로 109)	2,250	20	마포구, 용산구
138	백범로	마포구 노고산동 107-1(서강로 144)	용산구 한강로1가257-9 (백범로 400)	4,150	30	마포구, 용산구
139	마포대로	마포구 마포동 129-1(마포대로 8)	마포구 아현동 267-1(마포 대로 249)	2,813	51	마포구
140	홍익로	마포구 서교동 354-1(양화로 136)	마포구 서교동 358-27(홍 익로 1)	354	22	마포구
141	월드컵로	마포구 합정동 490(양화로 45)	마포구 상암동 442-3(가양 대로 114)	4,958	42	마포구
142	성암로	마포구 성산동 667(모래내로 9 길6)	마포구 상암동 1582-1(월 드컵북로 62길21)	3,485	27	마포구
143	상암산로	마포구상암동 1693(월드컵로 386)	마포구 상암동 1607(상암 산로 82)	927	31	마포구
144	연남로	마포구 연남동 361-1(연남로 98)	마포구연남동358-1(동교로 225)	1,048	24	마포구
145	대흥로	마포구 용강동 484-128(대흥로 14)	마포구 대흥동 12-2(대흥 로 193)	1,999	24	마포구
146	서강로	마포구 신정동 101(토정로 158)	마포구 노고산동 57-1(신 촌로 94)	1,489	46	마포구
147	토정로	마포구 합정동 376-24(토정로 9)	마포구 마포동34-1(마포대 로 19)	3,289	23	마포구
148	독막로	마포구 합정동 374-16(독막로 4)	마포구 도화동 17-22(마포 대로 83)	3,397	31	마포구
149	굴레방로	마포구 아현동 329-1(신촌로 270)	마포구 아현동 270-1(굴레 방로 1)	404	22	마포구
150	잔다리로	마포구 서교동 363-2(와우산로 71)	마포구 성산동 294-11(잔 다리로 133)	1,379	23	마포구
151	창전로	마포구 신정동 30(창전동 26)	마포구 신수동68-15(창전 로 100)	1,034	22	마포구
152	희우정로	마포구 합정동 396-4(포은로 5)	마포구 망원동 418-22(망 원로 22)	1,348	20	마포구
153	매봉산로	마포구 상암동 1643(매봉산로 8)	마포구 삼양동 2-243(성암 로 229-1)	927	30	마포구
154	양화로	마포구 합정동 380-36(양화로 16)	마포구 동교동 155-27(양 화로 183)	2,083	48	마포구
155	월드컵북로	마포구 서교동 353-1(양화로 133)	마포구 상암동 1752(월드 컵북로 501)	5,236	34	마포구
156	목동로	양천구 신정동 151-20(목동로 17)	양천구 신정동 898-2(목동 로 231)	2750	30~35	양천구
157	목동동로	양천구 신정동 325(목동동로 10)	양천구 목동 911-1(안양천 로 1071)	4517	25	양천구
158	목동서로	양천구 목동 909-2(목동서로 13)	양천구 신정동 324(목동 서로 411)	4,183	25	양천구
159	목동중앙로	양천구 목동 802-9(국회대로 289)	양천구 목동 900-2(목동중 양로 212)	2,205	23	양천구
160	신목로	양천구 신정동 334(신목로 9)	양천구 목동 404-3(신목로 120)	1,277	25	양천구
161	신월로	양천구 신월동 1321(이펜1로 99)	양천구 신정동1007-7(목 동로 159)	3,137	30	양천구
162	신정중앙로	양천구 신정동 934-1(신정중앙 로 2)	양천구 신정동 900-14(목 동로 201)	1,203	20	양천구
163	오목로	양천구 신월동524-1(오목로 2)	양천구 목동 404-5(신목로 2길 68)	3,800	20~40	양천구

164	공항대로	강서구 공항동 73-7(공항대로 6)	강서구 염창동 283-4(공항대로 653)	7,600	40	양천구, 강서구
165	등촌로	양천구 목동606-1(공항대로 530)	강서구 화곡동782-5(등촌로 3)	2,400	30~35	양천구, 강서구
166	화곡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39-1(화곡로 6)	강서구 가양동 1475(허준로 139)	6,024	35	양천구, 강서구
167	가로공원로	양천구 신월동 151-1(가로공원로 66)	강서구 화곡동 367-63(가로공원로 240)	2,405	25	양천구, 강서구
168	국회대로	양천구 신월동 217-21(곰달래길2길 46)	영등포구 여의도동 13(국회대로 800)	10,200	40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169	강서로	강서구 화곡동 907-3(강서로 5길 26)	강서구 가양동 1456-1(강서로 541)	5,526	30	강서구
170	금남화로	강서구 방화동 819(금남화로 167)	강서구 방화동 829-3(금남화로 127)	2,944	29	강서구
171	방화대로	강서구 외발산동 369-1(남부순환로 224-80)	강서구 방화동880(금남화로 24가길28)	5,010	38	강서구
172	초원로	강서구 방화동 651-5(초원로 2)	강서구 방화동 247-21(방화대로 303)	1,015	20	강서구
173	개화동로	강서구방화동621-24(개화동로 565)	강서구 방화동 340-53	2,800	34	강서구
174	양천로	강서구 염창동 259-2(양천로 743)	강서구 방화동505-6(개화동로437)	7,430	29	강서구
175	남부순환로	강서구 공항동 70-129(남부순환로 19-4)	강남구 일원동 4-1(남부순환로 3318)	32,620	40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176	개봉로	구로구 개봉동353-14(경인로 324)	구로구 개봉동 359-1(개봉로 7)	2,216	20	구로구
177	경서로	구로구 개봉동 157-13(경인로 323)	구로구 고척동 50-8(중앙로 69)	915	20	구로구
178	고척로	구로구 오류동 6-309(고척로 1)	구로구 고척동 189(고척로 239)	2,458	20	구로구
179	구로중앙로	구로구 구로동145-1(도림로 85)	구로구 구로동 614-63(중앙로 237)	2,827	35	구로구
180	구일로	구로구 구로동 700-2(구일로 16)	구로구 구로동 642-62(구일로 8길147)	1,937	20	구로구
181	신도림로	구로구 신도림동 400-1(신도림로 7)	구로구 신도림동 639(신도림로 105)	1,171	30	구로구
182	구로동로	구로구 가리봉동124-38(구로동로 2)	구로구 구로동 497-5(구로동로 240)	2,950	20	구로구
183	중앙로	구로구 고척동 76-10(중앙로 10-18)	양천구 신월동 455(중앙로 353)	3,900	30	구로구, 양천구
184	신정로	서울 구로구 궁동 35(오리로 1355-10)	양천구 신정동 1267(신정로 27)	3,433	25~30	구로구, 양천구
185	목동남로	구로구 고척동 186-11(중앙로 102)	양천구 신정동 330-10(목동로 31)	1,140	25~35	구로구, 양천구
186	벚꽃로	구로구 구로동 573(구로중앙로 152)	금천구 시흥동1020(시흥대로 73길 76)	5,200	12~20	구로구, 금천구
187	경인로	구로구 오류동 1-7(경인로 8)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92-2(경인로 114길 2)	2,300	32~34	구로구, 영등포구
188	가 산 디 지 털1로	금천구 가산동 691-3(가산디지털1로1)	금천구 가산동 481-5(가산디지털로 233)	2,425	20	금천구
189	가 산 디 지 털2로	금천구 가산동 327-32(가산디지털2로 14)	금천구 가산동 533(가산디지털2로187)	2,010	20	금천구
190	가산로	금천구 독산동 178-7(독산로 271)	금천구 가산동 140-1(가산디지털로 212)	1,617	20	금천구
191	독산로	금천구 시흥동 936(시흥대로 160)	금천구 독산동 950(독산로 366)	3,723	20	금천구

192	두산로	금천구 독산동 336-1(두산로 1)	금천구 독산동 289-8(시흥대로 403)	916	20	금천구
193	은행나무로	금천구 시흥동904(시흥대로 174)	금천구 시흥동910-24(은행나무로 51)	579	20	금천구
194	탑골로	금천구 시흥동1010(금하로 793)	금천구 시흥동 830-14(탑골로 1)	1,261	20	금천구
195	범안로	금천구 독산동1001-14(벚꽃로 130)	금천구 독산동 1037-3(범안로 1256)	1,500	20~48	금천구
196	문성로	금천구 독산동 961-16(독산로 332)	관악구 신림동 409-190(문성로 252)	2,500	20	금천구, 관악구
197	디지털로	금천구 가산동550-22(디지털로 103)	영등포구 대림동908-2(신길로 47)	3,510	20~30	금천구, 영등포구
198	가마산로	금천구 가산동 535-5(가마산로 70)	영등포구 신길공 714-1(가마산로 586)	5,150	20~30	금천구, 영등포구
199	시흥대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979-2(시흥대로 6)	영등포구 대림동 948-1(신길로 1)	6,846	40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
200	국제금융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국제금융로 10)	영등포구 여의도동53-22(국제금융로 124)	1,307	35	영등포구
201	당산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8-20(당산로 2)	영등포구 당산동6가 321(당산로 247-1)	2,525	30	영등포구
202	대방천로	영등포구 도림동 820(도영로7길15)	영등포구 신길동 4214(여의대방로23길2)	2,896	20	영등포구
203	도신로	영등포구 대림동785(도신로4길6)	영등포구 신길동101-21(도신로 258)	2,626	25	영등포구
204	도영로	영등포구 대림동629-35(도영로 2-11)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도신로 29길28)	1,232	20	영등포구
205	버드나루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145(버드나루로1)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87-1(버나루로155)	1,668	20	영등포구
206	선유동1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8-3(영등포로 85-1)	영등포구 양평동3가 69(선유로 176)	845	21	영등포구
207	신길로	영등포구 대림동 948-1(신길로 1)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7-5(경인로 894)	3,018	20	영등포구
208	신평로	영등포구 신길동426-3(신평로1)	영등포구 신길동500(신평로122)	1,290	25	영등포구
209	양평로	영등포구 당산동6가1(당산로 54길50)	영등포구 양평동5가41-1(양평로 153)	1,968	30	영등포구
210	여의나루로	영등포구 여의도동28(여의나루로 8)	영등포구 여의도동21-1(여의나루로121)	1,337	26	영등포구
211	여의대로	영등포구 여의도동28-3(여의대로 8)	영등포구 여의도동20(여의대로 128)	2,653	40	영등포구
212	여의동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3(여의대로8)	영등포구 여의도동20(여의대로128)	3,793	20	영등포구
213	영등포로	영등포구 양평동2가41-12(영등포로 1)	영등포구 신길동1300(영등포로 422)	4,257	30	영등포구
214	영신로	영등포구 도림동1-43(영신로 1)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86(영중로 169)	2,785	25	영등포구
215	영중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425-2(경인로 841)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86(영중로 169)	1,761	30	영등포구
216	은행로	영등포구 여의도동16-3(은행로 14)	영등포구 여의도동10-1(은행로 64)	715	25	영등포구
217	의사당대로	영등포구 여의도동15-21(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3)	영등포구 여의도동48-3(의사당대로 162)	1,671	75	영등포구
218	선유로	영등포구 문래동5가5-8(선유로 1)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9(선유로 278)	4,200	20~30	영등포구
219	도림로	영등포구 문래동 4가 9-1(선유로 34)	구로구 구로동 801-51(도림로 6)	4,450	20~25	영등포구, 구로구

220	도림천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7(선유서로 3)	영등포구 대림동 995-1(도림천로 21길 3)	4,400	20~40	영등포구, 구로구
221	여의대방로	영등포구대림동948-1(신길로 1)	영등포구 여의도동 40-3(여의대방로 439)	5,700	30	영등포구, 동작구
222	노들로	영등포구 양평동 6가 99(양평로 30길 51)	동작구 본동 258-1(노량진로 247)	8,640	25~40	영등포구, 동작구
223	대림로	영등포구 대림동650(대림로 256)	동작구 신대방동 692-63(대림로 8)	2,600	20	영등포구, 동작구
224	노량진로	동작구 대방동341-3(노량진로 2)	동작구 본동150-1(노량진동248)	2,599	35	동작구
225	보라매로5길	동작구 신대방동729-1(보라매로5길1)	동작구 신대방동395(여의대방로20길33)	114	25	동작구
226	사당로	동작구 사당동501-12(사당로 2)	동작구 사당동147-48(사당로 308)	3,162	20	동작구
227	사당로17길	동작구 사당동220-102(사당로 13길78)	동작구 사당동266-1(사당로237)	687	21	동작구
228	사당로23길	동작구 사당동708-831(사당로 23길84)	동작구 사당동129-11(동작대로27길38)	645	21	동작구
229	상도로	동작구 대방동399-3(상도로1)	동작구 상도동 126-16(상도로68길1-20)	4,258	20	동작구
230	상도로53길	동작구 상도동486-1(상도로 347)	동작구 상도동7-88(흑석로 24-1)	963	21	동작구
231	장승배기로	동작구 상동동208-14(장승배기로 1)	동작구 노량진동62-11(노량진로 132)	1,778	25	동작구
232	현충로	동작구 본동46-1(현충로2)	동작구 동작동41-2(현충로 210)	2,773	35	동작구
233	흑석한강로	동작구 흑석동335-1(흑석로2)	동작구 흑석동336(흑석로 27)	501	20	동작구
234	동작대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3-13(동작대로 7)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60(이촌로 303)	5,071	50	동작구, 용산구
235	봉천로	관악구 신림동1677-4(신사로 7)	관악구 봉천동 1634-9(봉천로 616)	4,800	20~40	동작구, 관악구
236	보라매로	동작구 대방동 405-11(보라매로 113)	관악구 봉천동 971-4(보라매로 2)	1,200	25~35	동작구, 관악구
237	양녕로	동작구 본동 10-23(노량진로 32길 10)	관악구 봉천동912-18(남부순환로 1761)	4,900	20~40	동작구, 관악구
238	관악로	관악구 신림동56-1(관악로1)	관악구 봉천동1000(관악로306)	3,094	35~40	관악구
239	신림로	관악구 신림동210(신림로23)	관악구 신림동1429-1(신림로391)	4,090	20~35	관악구
240	난곡로	관악구 신림동1735-1(난곡로 30)	관악구 신림동518-1(난곡로 367)	3,739	25	관악구
241	은천로	관악구 봉천동963-7(봉천로 309)	관악구 봉천동 42-58(은천로 186)	1,882	20	관악구
242	쑥고개로	관악구 신림동 94-140(관악구 쑥고개로 1)	관악구 봉천동 1569-4(쑥고개로 139)	1,444	20	관악구
243	낙성대로	관악구 봉천동1662-35(남부순환로 1892)	관악구 봉천동 238(낙성대로 101)	1,170	30	관악구
244	관천로	관악구 신림동 1637-11(신림로 299)	관악구 신림동 457-1(관천로 137)	1,363	20	관악구
245	조원중앙로	관악구 신림동 1668-15(남부순환로 1377)	관악구 신림동 551-8(신사로 54)	743	20	관악구
246	신사로	관악구 신림동 1446-18(봉천로 172)	관악구 신림동 1677-1(신사로 7)	1,900	15~20	관악구
247	호암로	관악구 신림동 316-127(호암로 484)	관악구 신림동 1513-2(호암로 605)	2,350	16~20	관악구

248	과천대로	관악구 남현동1060-10(남부순환로 2082-25)	서초구 방배동3032(방배대로 904	950	50	관악구, 서초구
249	사평대로	서초구 방배동 750-20(사평대로 12)	서초구 반포동 748-16(사평대로 373)	3,823	40	서초구
250	서초대로	서초구 방배동 300-1(동작대로 108)	서초구 서초동 1318-8(강남대로 399	4,268	40	서초구
251	고무래로	서초구 반포동 59-4(고무래로 6-6)	서초구 서초동 1682(서초대로65길 13-10)	1,056	26	서초구
252	나루터로	서초구 잠원동 54(서초구 잠원로 166-4)	서초구 잠원동 13-6(나루터로 83)	897	20	서초구
253	마방로	서초구 양재동 241(마방로 2)	서초구 양재동 275(마방로 68)	766	20	서초구
254	매현로	서초구 양재동 217-6(양재대로 159)	서초구 양재동 203(매현로 72)	1,232	20	서초구
255	명달로	서초구 방배동 1006-2(명달로 9)	서초구 서초동 1498-32(반포대로27길 48)	1,582	22	서초구
256	바우외로	서초구 우면동 1(바우외로 2)	서초구 양재동 4-3(논현로 139)	2,267	25	서초구
257	방배로	서초구 방배동 1026-14(방배로 1길 9)	서초구 방배동 757-1(방배동 285)	2,889	30	서초구
258	방배천로	서초구 방배동445-1(방배천로 2길2)	서초구 방배동 830-3(방배천로 160)	1,637	39	서초구
259	법원로	서초구 서초동 1705(법원로 15)	서초구 서초동 1717-6(서초대로 265)	216	40	서초구
260	사임당로	서초구 서초동 1582-2(반포대로 72)	서초구 서초동 1329-10(강남대로 337)	1,887	20	서초구
261	서운로	서초구 서초동 1354(서운로 3)	서초구 서초동 1302(사평대로 350)	2,305	20	서초구
262	서초중앙로	서초구 반포동 57-1(서초중앙로 255)	서초구 서초동 1448-4(남부순환로 2441)	2,940	30	서초구
263	신반포로	서초구 반포동 1130(신반포로 10)	서초구 잠원동 37-9(신반포로 339)	3,472	30	서초구
264	효령로	서초구 방배동 479-5(남부순환로 2137)	서초구 서초동 1340-6(강남대로 291)	4,395	30	서초구
265	반포대로	서초구 서초동 700(남부순환로 2364)	용산구 서빙고동134(서빙고로 279)	4,700	40	서초구, 용산구
266	양재천로	서초구 양재동 101(바우외로 18길 14)	강남구 대치동 511(남부순환로 3032)	4,500	20	서초구, 강남구
267	논현로	서초구 양재동 402-6(논현로 1길 23)	강남구 압구정동 436(강남구 압구정로 29길 69)	8,300	30~40	서초구, 강남구
268	강남대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강남대로 27)	서초구 잠원동 49-37(잠원로 221-31)	7,820	40	서초구, 강남구
269	언주로	서초구 내곡동 1-593(신흥말길 130-4)	강남구 압구정동 464(압구정로 39길 58)	12,080	30~40	서초구, 강남구
270	현릉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0(청계산로10)	송파구장지동596-21(송파대로 6)	8,500	30~51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271	양재대로	서초구 양재동 221(양재대로 11길 19)	강동구 고덕동 470(양재대로 1716)	17,160	40~50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72	영동대로	강남구 청담동 129(도산대로 551)	강남구 일원동 688(영동대로 4길 10)	5,683	70	강남구
273	도산대로	강남구 논현동 1(강남대로 606)	강남구 청담동 129(도산대로 551)	3,262	50	강남구
274	봉은사로	강남구 역삼동 808(강남대로 470)	강남구 삼성동 110-2(봉은사로 645)	4,070	35	강남구
275	압구정로	강남구 신사동 527-4(압구정로 102)	강남구 청담동 98(도산대로 459)	3,041	30	강남구

276	학동로	강남구 논현동 120(강남대로 548)	강남구 청담동 134-17(학동로 609)	3,755	40	강남구
277	테헤란로	강남구 역삼동 825(강남대로 390)	강남구 삼성동 171-3(테헤란로 629)	3,898	50	강남구
278	역삼로	강남구 역삼동 832(강남대로 334)	강남구 대치동 1004-1(역삼로 607)	3,607	20	강남구
279	개포로	강남구 개포동 1238(개포로 202)	강남구 일원동 639-7(개포로 670)	4,526	20	강남구
280	선릉로	강남구 개포동 141(선릉로 7)	강남구 압구정동 493(압구정로 347)	6,352	25	강남구
281	삼성로	강남구 개포동 189(삼성로 14)	강남구 청담동 48(도산대로 502)	5,061	35	강남구
282	광평로	강남구 개포동 산46-16 (일원터널)	강남구 수서동 722 (탄천공원)	3,100	30	강남구
283	봉은사로86길 테헤란로87길 (구아셈로길)	강남구 삼성동 147-2(봉은사로 516)	강남구 삼성동 158-23(테헤란로 513)	600	30	강남구
284	테헤란로8길 역삼로7길 (구특허청길)	강남구 역삼동 823(테헤란로 124 특허청)	강남구역삼동829-15 (역삼로125역삼초교사거리)	550	20	강남구
285	역삼로8길 도곡로7길 (구새밭길)	강남구 역삼동 834(역삼로 128)	강남구역삼동840-14 (도곡로139)	400	20	강남구
286	일원로	강남구 일원동 615(개포로110길 15 대청역)	강남구일원동717 (일원로121일원역)	1,200	25	강남구
287	밤고개로	수서IC	성남시계(세곡동사거리)	2,850	30	강남구
288	도곡로	강남구 도곡동943(강남대로 292)	송파구 잠실동 86(올림픽로 4길 15)	4,700	35~40	강남구, 송파구
289	위례성대로	송파구 방이동 44-2(위례성대로 2)	송파구 오금동 99-23(위례성대로 260)	2,600	70	송파구
290	중대로	송파구 가락동 150-38(중대로 16)	송파구 오금동 95(중대로 322)	3,200	35	송파구
291	문정로	송파구 문정동 55-6(송파대로 180)	송파구 마천동 22-1(성내천로 23가길 27-1)	3,000	20	송파구
292	석촌호수로	송파구 잠실동 19(올림픽로 99)	송파구 송파동 58-1(석촌호수로 298)	3,000	30	송파구
293	삼학사로	송파구 석촌동 221-15(삼학사로 2)	송파구 잠실동 47(삼학사로 136)	1,400	25	송파구
294	성내천로	송파구 오금동 97-8(성내천로 4)	송파구 마천동 277-21(성내천로 337-18)	3,400	20	송파구
295	오금로	송파구 신천동 17-4(올림픽로 435)	송파구 거여동 222-2(오금로 569)	5,700	35	송파구
296	백제고분로	송파구 잠실동 19-4(백제고분로 1)	송파구 방이동 180-7(위례성대로 34)	5,100	35	송파구
297	삼전로	송파구 삼전동 341-16(삼전로1길22)	송파구 잠실동 44(석촌호수로 169)	1,500	30	송파구
298	송파대로	송파구 장지동 608-5(송파대로 3)	송파구 잠실동 27(송파대로 567)	7,365	50	송파구
299	올림픽로	송파구 잠실동10(올림픽로 25)	강동구 암사동 100-3(올림픽로 112길 4)	9,400	25~60	송파구, 강동구
300	강동대로	송파구 풍납동 388(강동대로 13)	강동구 둔촌동 32-1(강동대로 341)	4,725	35~50	송파구, 강동구
301	동남로	송파구 문정동150(중대로 124)	강동구 고덕동 555(아리수로 256)	10,000	20~30	송파구, 강동구

302	상암로	강동구 암사동 510(상암로 2)	강동구 상일동 457-2(천호대로 1461)	4,332	38	강동구
303	성안로	강동구 성내동 448-9(강동대로 205)	강동구 천호동 122-1(성안로 201)	2,082	15~20	강동구
304	천중로	강동구 천호동 328(선사로 82)	강동구 길동 28-3(명일로 26길 25)	2,954	20	강동구
305	성내로	강동구 성내동 319-33(올림픽로 552)	강동구 성내동 434-13(성내로 33)	960	25	강동구
306	아리수로	강동구 암사동 440-1(올림픽로 836)	강동구 암사동 670(아리수로 97길 20)	4,400	20~35	강동구
307	고덕로	강동구 암사동 507-4(고덕로 25)	강동구 고덕동 210-1(고덕로 397버스차고지)	4,050	21~29	강동구
308	상일로	강동구 상일동 358-5(천호대로 1487 가나안신협)	강동구 고덕동 172(상일로 163)	1,630	25	강동구
309	구천면로	광진구 광장동 313-3(구천면로 14)	강동구 상일동 124-2(구천면로 669)	7,050	13~28	광진구, 강동구
				1,027,76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및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는 특정 구역에서 제외함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 433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구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구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1. 특정구역 지정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번지 일대 DMC구역

나. 면적 : 총면적 569,925㎡(유상공급 335,655.4㎡, 공공시설 234,269.6㎡)

2. 광고물의 종류 및 위치·수량

가. Digital Media City(이하 “DMC”라 한다)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전광류 광고물로 한다.

나.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1층에 한하여 표시한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의 경우에는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다. 간판은 1업소에 1간판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4층 이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라. 지주 이용 간판은 건물별로 1개 이하를 표시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연립형 간판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제2항제7호에 불구하고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불가피하게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포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연립형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의 제한

가. DMC구역에서는 플렉스 및 네온류 광고물등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4. 기타 사항

가. DMC에 입주한 기업은 이 고시 내용이 건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DMC구역에서는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등을 해치는 광고물등은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5. 부 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